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5. . . (제 회)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위원회
직제안

제출자	국무위원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5.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직제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관리 및 관리시설 부지의 조사·선정 등에 필요한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0843호, 2025. 3. 25. 제정, 9. 26. 시행)됨에 따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의 구성(안 제3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하며,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함.

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의 사무처 및 하부조직(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사무처에 사무처장 1명을 두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의 하부조직으로 기획소통과, 부지선정과 및 기반조성과를 둠.

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정원(안 제9조 및 별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체되는 공무원의 정원 2명(5급 1명, 6급 1명)을 포함한 35명(정무직 1명, 고위공무원단 2명, 3급 또는 4급 이하 32명)으로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5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25. 9. 3. ~ 9. 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직제

제1조(목적) 이 영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및 제15조에 따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사무를 관장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하고,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제4조(사무처)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국민과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 사무처장 1명을 두며, 사무처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5조(하부조직) 사무처에 기획소통과·부지선정과·기반조성과를 둔

다.

제6조(기획소통과) ① 기획소통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기획소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위원회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위원회 구성 및 회의 운영
3.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시행계획의 승인
4. 법 제18조에 따른 공론화 및 공론화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5.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발생자 및 관리사업자에 대한 검사·조치명령에 관한 사항
6.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발생자 및 관리사업자 등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7. 조직·정원의 관리 및 부서 간 업무범위 조정
8. 소관 법령 및 행정규칙의 심사·조정·총괄
9. 주요 정책에 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조정 및 집행
10. 언론 대응, 대외 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에 관한 사항
11.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사무 관련 대외협력
12. 그 밖에 위원회 내 다른 부서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제7조(부지선정과) ① 부지선정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② 부지선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이하 “ 관리시설”이라 한다)의 부지 적합성 조사계획의 수립·시행
2. 관리시설 부지선정을 위한 절차·방법 및 평가기준의 마련 및 조정
3. 관리시설 부지적합성 기본조사 및 심층조사 실시
4. 관리시설 부지의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5. 관리시설 유치지역 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관리시설 유치지역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7. 법 제28조에 따른 관리시설유치지역등을 위한 특별지원금 지원에 관한 사항
8. 관리시설의 운영에 관한 기준의 승인
9.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이하 “부지내저장시설”이라 한다)에 대한 시설계획 승인
10. 부지내저장시설 주변지역의 지원

제8조(기반조성과) ① 기반조성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② 기반조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반조성 계획의 승인
2.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한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3.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부지 내 지하연구시설의 부지선정·건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연구용 지하연구시설의 부지선정·건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술 전문인력 양성사업 추진

6.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술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취소
7.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관련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및 관리
8.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사무 관련 국제협력

제9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②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위원장이 훈령·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3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③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1명(4급 또는 5급 1명)은 산업통상자원부, 1명(5급 1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명(5급 1명)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대통령령 제00000호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에 부칙 제2조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 2명(5급 1명, 6급 1명)은 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위원회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체받는다.

[별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9조제1항 관련)

총 계	35
정무직 계	1
위원장(차관급)	1
일반직 계	34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상임위원)	1
고위공무원단	1
3급 또는 4급 이하	32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연 락 처	(044) 205 - 2344